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423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베스타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2. 인가업무

인가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
3-12-1	집합투자업	부동산 집합투자기구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
^{※「}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 1]

3. 인가조건

-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
 - 다만,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,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, 금융위원회가 최대 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4. 인 가 일 : 2021. 11. 12.